

학술대회 참가지원 정산 매뉴얼 (2026.07.20 개정)

본 매뉴얼은 2026년 7월 20일 개정된 공정경쟁규약 제9조(학술대회 참가지원)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되었습니다. 이번 개정으로 국외 개최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기준 중 식비 및 현지교통비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
특히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하여, “학술대회 참가지원이 여행·관광·여가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어서는 아니 되고,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”는 규약 제9조 제2항 제4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지원 자격: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발표자, 좌장, 토론자

- ①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
(1개의 초록으로 2명이 참석할 경우, 주저자는 꼭 포함되어야 함)
- ② E-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발표시간이 명시된 1인 (질의응답 시간 가능)

2. 지원 항목: 실비의 교통비, 등록비, 식대, 숙박비

① 교통비

가. 국외 개최 학술대회

- (1)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국제항공운임 (변경 없음)

(2) 현지교통비

▶ 2026.07.19까지 적용: 학술대회 기간 내 최대 15만원 (실비 지원)

▶ 2026.07.20부터 적용: 학술대회당 10만원 정액 지원

나. 국내 개최 학술대회 (변경 없음)

- (1)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국내항공료, KTX, 고속버스

② 등록비: 사전등록

③ 식대: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

가. 국외 개최 학술대회

- (1) 2026.07.19까지 적용: 식사시간대 현지 식당 영수증, 1식 1장 5만원 이내

(2) 2026.07.20부터 적용: 개최지역 공무원 여비규정 등급별 1일 정액 지원

가등급 100,000원, 나등급 80,000원, 다등급 60,000원, 라등급 50,000원

나. 국내 개최 학술대회 (변경 없음)

- (1) 식사시간대 현지 식당 영수증

- (2) 1식 1장 5만원 이내

④ 숙박비: 미니바, 영화, 세탁, 전화 등 숙박에 부수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.

기간은 학술대회 개최 1일전부터 종료일까지 지원 가능

Early Check-In & Late check-Out Charge 지원불가

*국외 개최 학술대회: 1박당 35만원(세금 및 봉사료 포함)

*국내 개최 학술대회: 1박당 20만원(세금 및 봉사료 포함)

3. 정산 제출 서류 (학술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)

- ① 참가자의 자격 및 학술대회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실비의 영수증
- ② 학술대회 참가 명단(개인별 지출내역과 결과보고서)
- ③ 학술대회 등록비 현황
- ④ 참가자가 해외 연수 중인 경우: 해외연수 확인서 & 사유서 제출
 - 정산 시 적용환율: 학술대회 시작 전일 외환은행 현금매입 최초고시가
 - 학회가 취합하여 협회에 전달한 증빙자료를 최종본으로 간주하여, 보완요청이나 재 요청 없이 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정산 서류 제출 시 증빙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1) 참가자격 제출서류

- 학술대회 주최측에서 보내온 연자, 발표자(포스터 발표자 포함),좌장,토론자 선정 메일
- e-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발표시간 명시된 증빙 필요
-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초록 사본 & 발표자가 명시된 아젠다
- 발표자가 아닌 저자 1명만 참석할 경우 발표확인 사유서

- 1개의 초록으로 2명이 참석할 경우, 2명은 주저자와 발표자로 주저자가 꼭 포함되어야 함
- 발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e-포스터 발표자 1인만 지원

(2) 교통비

1) 국외 개최 학술대회

-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, 귀국일자 확정요금
- 학술대회 개최일 기준 -2일부터 종료일 +1일까지 전액 지원(항공비 가이드라인 참조)

2) 현지교통비 제출서류

▶2026.07.19까지 적용: 학술대회 기간 내 최대 15만원 (실비 지원)

▶2026.07.20부터 적용: 학술대회당 10만원 정액 지원

(개최도시에서 사용한 영수증 1건 이상 제출 시)

3) 국내 개최 학술대회

- 여정이 적힌 내역서, 영수증,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 항공료, KTX, 고속버스

● 항공권 제출서류: 보딩패스 & 항공권 구입 영수증 & 이티켓

- 보딩패스 분실 시: 항공사 발행 탑승 확인서 or 마일리지 적립 확인서 or 출입국확인서
- 개인 마일리지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내역
- 항공료를 지원받지 않더라도, 숙박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티켓 or 보딩패스(사본가능)
- 여행사 수수료, 수화물비 지원 불가

● 현지교통비 제출서류

▶2026.07.19까지 적용

- 공항↔호텔 왕복 및 숙소↔행사장 왕복 교통비로 1일 왕복1회 한정
- 이용 날짜, 행선지가 명시된 영수증 (출도착 행선지 수기작성 가능)
- 학술대회 당 15만원 이내 (국내학술대회 참석 시는 지원되지 않음)

▶2026.07.20부터 적용(국외 개최 학술대회에 한함)

- 학술대회 당 10만원 정액 지원 (실제 사용 금액과 무관)
- 개최도시에서 사용한 영수증 1건 이상 제출 (출·도착 행선지 수기작성 가능)
- 국내 학술대회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되지 않음

(3) 등록비 제출서류: 등록 확인증 & 항목 확인되는 등록비 납부 영수증

-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함
- 회원가입비는 지원불가.
 - 단, 회원가입비+사전등록비의 금액이 비회원 등록비보다 저렴할 경우 지원가능
- 등록비 항목 중 Dinner Meeting/Gala Party는 식비로 지원

(4) 식대 제출서류: 이용 날짜, 시간이 명시된 식비영수증

- ▶ 2026.07.19까지 적용
 - 식사시간대에 현지 식당에서 1식 1장 5만원 실비 지원
 - 영수증에 Guest 인원이 1인이 아닌 경우 1/n 적용
- ▶ 2026.07.20부터 적용(국외 개최 학술대회에 한함)
 - 개최지역 공무원 여비규정 등급별 1일 정액 지원
 - 참석일마다 식비 영수증 1건 이상 제출 필수(날짜별 개최도시에서 사용한 영수증)
 -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정액 지원

(5) 숙박비 제출서류: 호텔명이 명시된 체크인.아웃 목록 & 결제영수증

- 국내: 1박당 20만원, 해외: 1박당 35만원이내 (세금 및 봉사료 포함)
- 호텔 숙박비에 조식 포함이 명시된 경우만 조식 인정
- 미니바, 영화, 세탁, 전화, 인터넷 등 숙박에 부수되는 비용 지원불가

국외 여비 지급표(제16조제1항 관련)

2.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가. **가등급**: 도쿄, 뉴욕, 런던, 로스엔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 D.C., 파리, 홍콩, 제네바, 싱가포르

나. **나등급**

- 1) **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**: 베이징, 사모아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, 일본, 카자흐스탄, 쿡제도, 타이완, 파푸아뉴기니
- 2) **남·북아메리카주**: 멕시코, 미국, 바베이도스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, 세인트키츠네비스, 아이티, 앤티가바부다, 자메이카, 캐나다, 트리니다드토바고
- 3) **유럽주**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사이프러스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- 4) **중동·아프리카주**: 가나, 가봉, 남수단, 남아프리카공화국, 리비아, 모로코, 바레인, 사우디아라비아, 세이셸, 쿠웨이트, 아랍에미리트, 앙골라, 에티오피아, 오만, 우간다, 이스라엘, 이집트, 적도기니, 카타르, 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

다. **다등급**

- 1) **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**: 뉴질랜드, 니우에, 마셜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인도네시아, 중국, 키르기즈공화국, 타이, 터키, 투르크메니스탄, 파키스탄, 피지
- 2) **남·북아메리카주**: 가이아나, 과테말라, 도미니카공화국, 베네수엘라, 벨리즈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에콰도르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파나마
- 3) **유럽주**: 라트비아, 루마니아, 리투아니아, 몬테네그로, 불가리아, 세르비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, 우크라이나, 체코, 크로아티아, 폴란드
- 4) **중동·아프리카주**: 기니, 나이지리아,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레바논, 르완다, 말리, 모리셔스, 모잠비크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상투메프린시페, 세네갈, 수단, 스와질란드, 시에라리온, 아프가니스탄, 알제리, 요르단, 이라크, 잠비아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카메룬, 케냐, 탄자니아

라. **라등급**

- 1) **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**: 네팔, 동티모르, 라오스, 몽골, 미얀마, 미크로네시아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통가, 캄보디아, 타지키스탄, 필리핀
- 2) **남·북아메리카주**: 니카라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
- 3) **유럽주**: 마케도니아, 몰도바, 벨라루스,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, 알바니아
- 4) **중동·아프리카주**: 감비아, 기니비사우, 나미비아, 레소토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모리타니, 소말리아, 예멘, 이란, 짐바브웨, 튀니지

3.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